

부천시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12월 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9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16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(2004년 12월 14일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주민자치과장 박한권)

제안이유

- 2005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 지역까지 확대하여 실시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부천시 장학금의 지급정의와 장학생의 자격 중 중학생을 제외함.
(안 제2조제2호 내지 제3조제1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없음	<input type="radio"/>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30호
의결 년월일	2004.12.23 (제116회)

제출년월일 : 2004. 12. 8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- 2005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 지역까지 확대하여 실시됨에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중학교”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<u>중학교를 말하며, 교육법 제103조의3 및 제10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는 제외한다.</u></p> <p>3.~4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</p> <p>3.~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 장학생은 장학금 신청(추천)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(“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”를 말한다. 이하 같다)하는 학생으로서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<u>중학교에서 재학중인 자로서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의 성적 우수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자</u></p> <p>2.~4.(생 략)</p> <p>②(생 략)</p>	<p>제3조(장학생의 자격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2.~4.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